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63

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김희정·김종양・박준태

김승수 • 박성민 • 김도읍

서일준 · 정연욱 · 김은혜

이인선 · 김태호 · 권영진

곽규택 · 최수진 · 정성국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.

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,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 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,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,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3항·제4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자동차 제작·판매자 등은 구동축전지가 탑재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동축전지 제조사 및 성능상태 등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1. 구동축전지 제조사, 제조일자
- 2. 구동축전지의 용량, 잔존 수명 등 성능상태
- 3.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고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구동축전지가 탑재된 자동차의 경우 제8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자동차제작·판매자등	제8조의2(자동차제작・판매자등
의 고지의무) ①·② (생 략)	의 고지의무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자동차 제작・판매자 등은
	구동축전지가 탑재된 자동차를
	판매할 때 구동축전지 제조사
	및 성능상태 등 다음 각 호의
	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
	<u>한다.</u>
	1. 구동축전지 제조사, 제조일자
	2. 구동축전지의 용량, 잔존 수
	명 등 성능상태
	3.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<u>사항</u>
<u><신 설></u>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고지
	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69조의2(자동차이력관리 정보	제69조의2(자동차이력관리 정보
의 제공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	의 제공) ①
자동차의 제작, 등록, 검사, 정	
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	
이력(이하 "자동차이력관리 정	
보"라 한다)을 자동차소유자 등	
에게 제공할 수 있다. <단서 신	<u>다만, 구</u>
<u>설></u>	동축전지가 탑재된 자동차의 경

	우 제8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
	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